

MARS AUTO

발신: 주식회사 마스오토

수신: 유인 자율주행 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이용자

유인 자율주행 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의 규제특례 이용자 고지사항

1. 규제 특례 내용

유인 자율주행 솔루션과 관제 플랫폼을 활용하여 간선도로를 통한 트럭 화물 운송 서비스의 운영 실증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구역: 물류센터를 잇는 간선도로
 - ① 세종 - 원주/장성
 - ② 경주 - 청주
 - ③ 인천 - 옥천
 - ④ 진천/평택 - 양산/사천
 - ⑤ 서울 - 대전
 - ⑥ 아산 - 부산
 - ⑦ 충청 - 부산
 - ⑧ 평택 - 원주/장성/양산
- 기간: 24개월(2023.03~2025.03 및 연장 ~2027.03)
- 규모: 자율주행 트럭 14대 이내

3. 법 제10조의3 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9조(보험가입의무) 등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 이상의 보험에 가입할 것
- 실증에 사용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일 것
- 향후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다수의 시·도에 걸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장거리 화물운송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유상운송 특례를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화물운송 서비스를 실시할 것
- 업체가 설정한 운행가능영역(ODD, Operational Design Domain) 내에서만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고 운행가능영역을 벗어날 시에는 수동운전을 실시하면서 서비스를 실증할 것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10억 등을 한도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사고당 2억원 이상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사업자가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